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14시~17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실(212호)

CONTENTS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인사말

005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 변호사)

토론회를 개최하며

010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 법무법인 (유)원)

발제 1

015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제 2

047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어플리케이션 규제 방법
- 형사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차민정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변호사)
-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정안
배수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지정토론

103

토론 1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
토론 2 안성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여성가족부법률자문관 파견 검사)
토론 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토론 4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팀장)
토론 5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변호사)
토론 6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사회 : 강정은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14:00~14:10

인사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좌장 :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 법무법인 유(원) 변호사)

14:10~15:00

발제 1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발제 2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어플리케이션 규제 방법
- 형사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차민정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변호사)
-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정안
배수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15:00~15:15

휴식

15:15~16:15

지정토론

토론 1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
토론 2 안성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여성가족부법률자문관 파견 검사)
토론 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토론 4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팀장)
토론 5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변호사)
토론 6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16:15~17:00

질의응답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장민혜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운영위원장 장민혜입니다.

오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만큼이나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대다수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누구도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제5조(사회의 책임)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환경을 정비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리라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기술이 따라가지 못해서,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규제와 관련한 법이 없어서 아동·청소년들을 어플리케이션 성매매 시장에 볼모로 맡겨둔 채 외면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모텔에서 살해되고 거리에서 성착취를 당하며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과 방관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상의 세월호입니다. 최근의 관악구 여중생 살해사건,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성착취 사건 등 청소년 성착취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들이 이 현실을 자신의 죽음과 고통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미루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 보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법적·행정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과연 교육인가? 처벌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성매매 피해자로서 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과 장치가 재정비 되어야 한다고, 청소년 성매매 문제로 우리 사회에 말 걸기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토론회 또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통한 우리 사회에 말 걸기입니다. 소통이 부재한 사회를 넘어서, 민관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사법기관과 관련부처 및 기관의 한걸음 더 나아간 입장 변화가 가능하다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사회의 문제 인식이 보다 선명해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보다 확고해 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로 뜻과 의지를 함께 모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무법인(유)원, 사단법인 선, 그리고 토론회를 위해 1년 동안 고군분투해 온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서순성 단장님과 지원단 여러분, 또한 관련 단체와 기관의 토론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이런 사회에서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부디 더 늦기 전에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 (제)개정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작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만 14세 아동청소년이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시죠? 올해 4월에는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모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였습니다.

저는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온라인이나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 및 현행 법령상의 규제 및 처벌의 부재를 다룬 바 있습니다.

지난 토론회에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인터넷과 채팅앱을 매개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이번 후속 토론회를 기회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알선, 조장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청소년들이 불법·유해 정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피해를 예방 및 근절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십대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 재·개정에 앞장설 것입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정책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어 발표를 해주실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님, 차민정, 배수진 변호사님, 좌장을 맡아주신 법무법인 (유)원 서순성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실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성희 검사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조용수 과장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명호 팀장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배진수 변호사님, 국회 차인순 입법 심의관님과 이 자리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회의 공동주최단체 중 하나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공익법센터는 여러 변호사들이 활동하는 독립된 법률사무소이면서도, 서울시 복지재단 내에 있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익법센터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관련 법률지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둘의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일반가정 출신 청소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 피해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저성장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소득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가출 증가 현상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는 청소년 고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복지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익법센터는 올해 일명 하은이 사건으로 불리는 13세 지적장애 아동의 성매매사건에서 공동 원고 대리인 중 하나로 참여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에도 공동주최단체 중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계속 되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임을 반증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지 법조항 하나 달랑 만들어서는 안되고 여러 행정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 토론회에는 검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관계자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뜻 깊은 자리이어서 현실적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말씀들을 기초로 우리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들을 보호·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이용의 90% 이상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눈에 보이는 알선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고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출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부터 유기, 방임되었거나 신체, 언어 등 폭력을 경험하여 원가족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궁박한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을 돈으로 유혹하여 성매매로 이끈 것은 성인들이며, 이 자체만으로도 자발적 성매매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증절차도 없이 가입을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우리 센터가 3년째 지원하고 있는 일명 ‘하은이’ 사건의 13세 지적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이러한 성매매 알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끔찍한 성범죄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왔으며, 그 범죄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연령도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고 심지어 안정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보호 하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동청소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사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아동청소년들의 부주의만 탓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에게 돈을 받고 성적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만들고 놓고 인증절차도 없이 가입을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인·알선·조장하고 있는 성매매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사실상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들입니다.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들은 이러한 성매매 어플

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의해 알선된 피해아동청소년들입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이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에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독소조항인 ‘대상아동청소년’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토론회 ‘청소년 성매매 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를 개최하였고, 2016년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 이렇게 해봅시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 번째 토론회를 통해 나온 대안은 현재 국회의원 남윤인순 의원실에서 발의,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아청법 개정안으로 외화되었으며, 오늘 개최하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알선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규제 법률을 (제)개정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위해 정말 애쓰고 힘써주신 우리 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10월 11일에는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상대로 피해아동청소년 2인과 255개 단체들이 함께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고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아동청소년들의 미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기쁨과 슬픔, 공포와 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센터의 15명의 활동가들, 늘 힘들고 바쁜 일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법무법인(유) 원, 사단법인 선,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 내셔서 아동청소년들의 좀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토론자님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와주셔서 참석으로 지지해주시고 발언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따끔한 충고로 풍요롭게 해주신 참석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순성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서순성 변호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정춘숙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각계 전문가님들과 오늘 토론회의 주제와 관련하여 1년 여를 연구해 오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토론회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사단법인 선과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우리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규제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아동·청소년들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및 이를 위한 규제철폐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의 변호사님들은 2015년 말경 법률지원단 회의에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고, 성매매의 조건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IT,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문제점을 들어본 결과, 이들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리자·운영자들 역시 이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음에도 광고료, 운영수익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회적·법적 책임은 방기한 채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형사사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모두가 이에 대한 형사법적·행정법적 규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공론화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월 11일에는 YWCA 등 255개 단체와 함께 이들 채팅어플리케이션 관리자·사업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공동고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1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모드 드 보어-부키치오(Maud de Boer-Buquicchio)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에게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현행 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령의 문제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적시한 진정 서한(Letter of Allegation)을 보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대안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현행 형사법적·행정법적 규제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형사적, 행정법적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은 지난 1년간 TFT를 만들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왔고, 그 결과물이 오늘 발제문입니다. 요즘 변호사들의 현실이 녹록치 않음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연구를 수행하신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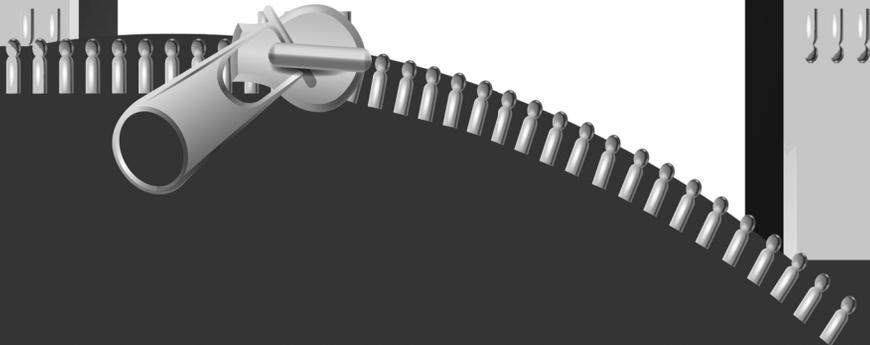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준비한 현행 채팅어플리케이션 규제방안의 문제점 및 그 대안에 대해 국회, 검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장실무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모여 보다 정교한 입법 및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청소년 성매매문제에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는
시급히 필요합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1. 들어가며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94.8%, 자기 소유의 휴대폰이 있는 청소년은 91.1%였습니다.

이러한 컴퓨터와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는 2016년 현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린 저 연령층까지 포괄하여 확장되고 보편화되었을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듯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심지어 성매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성구매자에게 살해된 만 14세 아동청소년의 경우도, 2016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이 6명의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에 이용된 사건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입니다. 더욱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절차상 나이 등을 확인하는 장치가 없고 대화내용에 대한 통제나 규제도 불가능하여 공공연하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신고조차 할 수 없도록 최근에는 캡처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습니다. 신문, 방송 등 전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이용 폐해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 알선, 조장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 사례를 통해 본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의 필요성

사례 1

17살 피해자는 호기심에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고 1회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함. 성매수자가 피해자 몰래 찍은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피해자의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함.

2015. O. O. 32세 성매수자는 채팅 어플 ‘양X’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해자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때 성매수자는 17세 피해자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촬영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성매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피해자의 개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개인 SNS 개정을 삭제하고 거절하였으나 새로 만든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동영상 유포할 것을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2015. O. O. 성매수자는 한번만 만나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센터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검거를 통해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체포한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 성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21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사례 2

경계선 지적장애로 왕따 경험이 있는 만 13세 피해자에게 피해자 모친은 사이버상에 친구를 만들어주고자 친구찾기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을 알려줌. 2014년 0월경 피해자는 모친의 핸드폰을 망가뜨린 후 야단맞는 게 겁이나 가출을 결심하고 친구찾기 어플리케이션에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 그리고 만난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함.

2014년 0월경, 만 13세를 2개월 지난 한 아이가 모친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놀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다. 엄마에게 야단맞는 것이 두려워 아이는 가출을 결심하고 핸드폰의 친구찾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 이라는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 성인 남성을 만났다. 또래에 비해 지능이 약간 떨어져 학교에서도 자주 왕따 경험이 있던 아이는 갈 곳이 없어 그 남성을 따라 모텔에 가서 성폭행을 당했다. 첫 성경험이었고 너무 무서웠고 혼란스러웠던 아이는 더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핸드폰 앱을 통해 친구를 찾았다. 그 후 6명에 달하는 성인 남성들에게 간음 및 추행을 당했다. 가출신고가 되어 있어 거의 1주일

이 지난 후 아이를 찾았지만 아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거지꼴이 되어 있고 뭔가 이상한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서울의 한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성폭력으로 신고한 후 국선변호사 입회하에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 수준인 만 13세 아이가 가출하였지만 그 아이를 만났던 심여명에 달하는 어떤 성인도 아이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아이를 성폭행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아이를 안심시킨 후 황설수설하는 아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등 증거를 모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아이는 그 일이 있고 난후 극도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심각한 우울증상을 보였고 급기야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야 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정신병원에서도 남성 보호사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 기가막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보호사를 성폭력으로 신고하였다.

사례 3

17세 여고생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가출 한 뒤 그 남성의 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당한 사건.

2016년 0월경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여 로그인 하자마자 30세 가해자에게 쪽지를 받았다.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본 가해자는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성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잘 모른다고 하였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자신의 성적 성향을 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만나자고 했다. 무서웠던 피해자는 거부했지만 가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니 괜찮다고 하며 만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서 폭력적인 성폭력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해자에게 무섭고 아파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고, 이후 피해자와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며 피해자가 가출할 것을 설득했다. 피해자는 집을 나오는 것이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가해자의 말에 설득되어 가출을 했다. 가출을 한 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에 지내면서 성매매 알선을 당하기 시작했다.

1)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현장에 쉽게 유인하게 만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성매매 현장에 유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1의 경우 피해자가 호기심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쪽지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어플리케이션 내에 성매매를 규제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매매현장에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 제재되지 않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학습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는 만 13세지만 또래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피해자조차 쉽게 어플리케이션에서 채팅방을 개설하고, 성인남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현 실태와 폐해를 보여준다.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쪽지를 주고받는 것에 아무런 확인절차 및 규제 장치가 없는 현재의 많은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은 사이버 상에서 거대한 성매매의 장을 만들 뿐이다.

사례 3의 경우도 피해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자마자 30대의 알선자가 접근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 감금, 성매매에 이용한 사건이다. 알선자가 채팅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성매매 및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정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의 방임 및 규제 장치의 부재로 피해자가 의도치 않았음에도 성매매의 장으로 유입됐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내 성매매를 나타내는 약어의 규제 및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성구매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을 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채팅방의 문구 등을 방임하는 운영자에 대한 처벌 등 규제방안을 위한 법령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2) 익명성 (성인인증절차의 부재)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회원가입, 성인인증의 절차 없이 닉네임/성별/나이/지역을 임의로 설정한 후 바로 입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례 1, 2, 3에서 피해자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아무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성인들에 의해 성매매에 유인·이용을 당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프로필 설정 시 20세 이상부터 나이를 설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실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고딩’, ‘18’, ‘열일곱’ 등의 닉네임으로 이용자들은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다. 사례 3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입장할 때 피해자는 ‘17녀(여29세)’로 로그인했다. 괄호 안의 나이는 프로필 설정 시 선택한 것(20세부터 선택 가능)이지만 ‘17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닉네임이다. 이것을 보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17세 미성년자임을 추측할 수 있었고, 대화를 시작할 때 나이를 물어봄으로써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성인인증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나이 설정의 한계를 두는 시스템은 무용지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례 3의 가해자는 성별 등 프로필을 모두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했다. 가해자(알선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여성으로 입장하여 미성년자로 둔갑했다. 모든 조건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한 후에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었고, 피해자는 자신과 채팅을 했다고 알고 있는 성구매자가 가해자와 거래한 조건에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대화내용 저장 및 캡처 불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알선의 장이 되고 있는 대부분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는 대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대화 도중 일방적으로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내용은 사라진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나누는 관계에서 거의 대부분은 서로의 번호를 공유하지 않고 이뤄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화창을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으며, 성구매/알선자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우 유용한 특징이 된다. 실제로 성매매 피해 아

동·청소년이 채팅 중 상시 대화화면 캡처를 하지 않는 이상 성구매자의 성매매 유인·구매·알선의 증거를 전혀 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지원단체에서 캡처한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많은 소송을 지원하는 상황이 늘어나자, 많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대화내용을 캡처마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이 그들이 주장하는대로 단순히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구매자에게 더욱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있다.

4) 성매매 유형과 대가의 다양화

최근 일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영상채팅의 생성과 포인트 방식 등에 변화가 있다. ‘인기톡(심톡)’은 영상채팅 기능을 도입했는데, 처음 1분은 무료이지만 남성 사용자가 포인트를 소요해 영상채팅을 이어가면 여성 사용자에게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채팅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82톡’은 처음 쪽지를 보내 1:1 채팅방을 개설할 때만 포인트가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답장이 오면서 대화가 이어질 때 쪽지마다 지속적으로 일정 포인트가 소요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운영자뿐 아니라 채팅을 이어가는 상대방에게도 일부 포인트가 돌아가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 특징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더 자극적인 대화를 시도하게 하는 요인이다. 온라인 상에서의 성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사진, 영상, 속옷 팔이 등 성매매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다. 또한 그런 종류의 성매매 과정에서 성구매자가 신분을 숨기기 위해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트콘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등 성매매 대가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 속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는 성매매 활성화에 더욱 보탬이 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을 처벌할 적극적인 법령의 부재로 운영자들과 성구매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악순환을 반복되게 하고 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 알선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자료 및 처리결과

1) 어플리케이션 신고와 처리결과

(1) 특앤 (신고 당시 12세 이용가)

① 신고자료

<p>18세 미성년자 / 선불로 5만원, 만나서 10만원을 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p>	<p>성관계 1회시 9만원, 2회시 13만원의 가격 제시와 함께 (키 171cm/60kg/가슴사이즈 85B컵) 본인 신체사이즈를 설명함.</p>

② 신고내용

- 매너, 조8건이라는 글로 성매매를 암시하고 있어 신고하였다.
- 10~15만원 가격제시를 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해당 없음.

(2) 영톡 (신고 당시 18세 이용가)

① 신고자료

	
<p>29세 남성이 2시간에 15만원, 3시간에 20만원을 주겠다고 가격을 제시함.</p>	<p>원편 신고자료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 고등학생에게 스폰을 해주겠다는 내용, 속옷·스타킹을 사겠다는 내용, 한 달에 3~4회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임.</p>

② 신고내용

- 매너, 조꺼ㄴ, 지금바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이 있어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해당 없음.

(3) 앙스 (신고당시 12세 이용가)

① 신고자료

<p>16세, 17세 미성년자 / 조건만남 할 사람이나 가출해서 지낼 곳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음. 여17세로 로그인했지만 남자라고 밝히고 있고 30분에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강성교를 제한함.</p>	<p>왼편 신고자료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료. 27세 여자로 로그인 했지만 닉네임에 1-팔 이라고 표기하여 미성년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슴사이즈(D컵)를 설명함. 양말/스타킹, 성관계 영상을 판매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p>

② 신고내용

• 스기, 조오웃건, 가격제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해당 없음.

(4) 만남의 조건 (신고 당시 17세 이용가)

① 신고자료

<p>유사성행위 사진과 함께 ‘스*’이라는 약어(조건만남을 의미)를 사용함.</p>	<p>키 168cm, 가슴사이즈 C컵 등의 신체정보와 3시간에 15만원의 가격을 제시함. ‘조건’은 조건만남을 의미함.</p>

② 신고내용

- 조건만남, 조건 등 성매매유인행위 대화가 이루어져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2015년 하반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결정을 하였지만, 이후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했을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음.)

(5) 낯선 사람과의 대화 (신고 당시 12세 이용가)

① 신고자료

<p>로그인 했을 때 대화 상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랜덤으로 선택된 사람과 채팅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임. 지역을 밝히며 오프라인으로 만나 성관계 할 여성을 찾고 있음. '조건너'는 조건만남을 할 여성을 의미함.</p>	<p>중학생, 고등학생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있음. 랜덤채팅이기 때문에 불특정 여자 청소년에게 성매매 초기유입의 위험성이 큼.</p>

② 신고내용

- 조건너라는 글로 성매매를 유인하고 있어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해당 없음.

(6) 드루와

① 신고자료

<p>18세 미성년자 / 조건만남이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했음.</p>	<p>‘스ㄱ, ㄹㄴ’ 등 조건만남, 성매매를 의미하는 약어.</p>

② 신고내용

- 18세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하는 채팅창을 보고 신고하였다.
- 스ㄱ, ㄹㄴ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약어를 보고 신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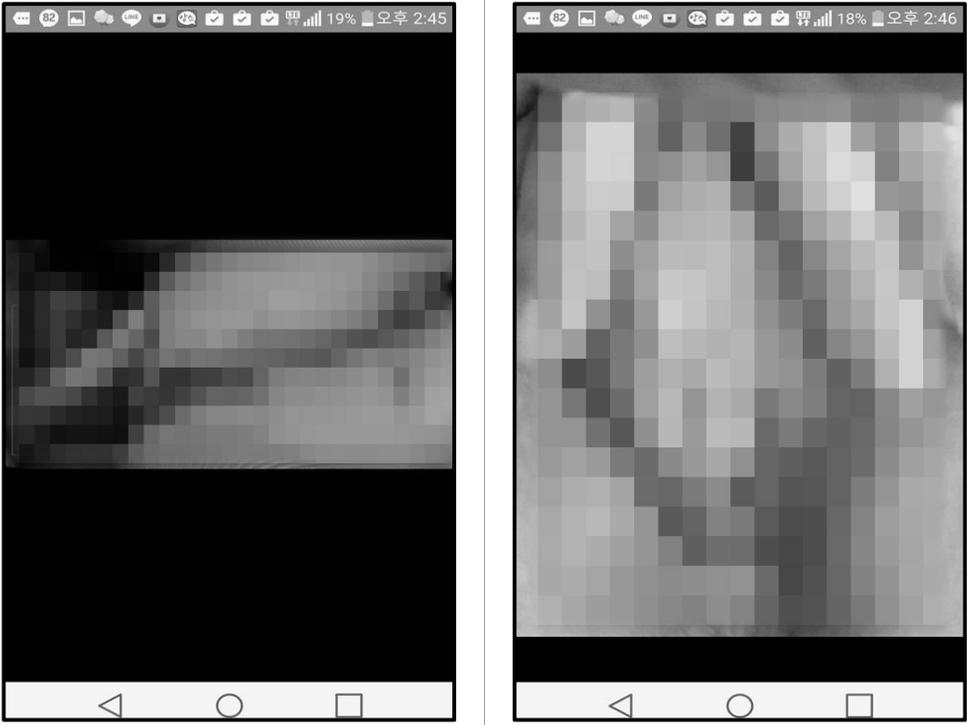
③ 신고처리결과

민원인 정보			
신청인		단체명	십대여성인권센터
연락처	02-6348-1318	휴대전화	010-3232-1318
이메일	10up@hanmail.net	결과회신방법	이메일
주소	(-)		
신청내용			
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제목	성매매 징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고합니다.		
내용	조건만남, 자기위안 영상을 매매 하는 등 미성년자가 성인인증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성매매 징후가 나타나 신고합니다.		
처리내역			
고유번호	4052	처리일시	2016-
처리결과	해당 신고정보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미니’ 등 조건만남, 성매매를 의미하는 약어언급 뿐만 아니라, 18세의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하며 성매매, 조건만남의 징후가 뚜렷하게 보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신고처리 결과를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7) 폰톡

① 신고자료



성기사진을 찍어서 폰톡에 올림

② 신고내용

- 성기사진을 찍어 폰톡에 올려놓아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 민원인 정보			
신청인		단체명	십대여성인권센터
연락처	02-6348-1318	휴대전화	010-3232-1318
이메일	10up@hanmail.net	결과회신방법	이메일 SMS통보
주소	(-)		
▶ 신청내용			
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제목	성매매 징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고합니다.		
내용	공통이라는 채팅 어플입니다. 성기 노출, 동영상 판매, 조건 만남, 성매매 유인글 등이 있어 신고합니다.		
▶ 처리내역			
고유번호	414	처리일시	2016-
처리결과	해당 신고정보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성기를 여과 없이 노출하였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신고처리 결과를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8) 하이라이브

① 신고자료

	
<p>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놓은 후, 영상을 판다고 채팅창에 올림.</p>	<p>자영(자위영상의 약어)을 판매, 조건만남을 '조1건'으로 올림.</p>

② 신고내용

-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린 후 영상을 판다는 채팅방을 보고 신고하였다.
- 자위영상을 판매, 조건만남을 가리키는 '조1건'이라는 채팅방을 보고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민원인 정보			
신청인		단체명	십대여성인권센터
연락처	02-6348-1318	휴대전화	010-3232-1318
이메일	10up@hanmail.net	결과회신방법	이메일
주소	(-)		

신청내용	
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제목	성매매 징후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신고합니다.
내용	1. 민원취지 하이라이프 라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음란한 정보를 유통중이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삭제 요청 2. 민원내용 지속적으로 성행위 묘사, 자기위안 동영상 판매, 성매매알선 등 음란정보를 유통중임

처리내역			
고유번호	415	처리일시	2016
처리결과	해당 신고정보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항을 판단?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올려놓은 뒤 영상을 판매하고, 자영(자위영상의 줄임말)을 판매한다며 음란한 정보를 유통 중임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신고처리 결과를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9) 특메이트

① 신고자료

	
<p>17세 미성년자/ 조건과 바로만남이라고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했음.</p>	<p>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올린 후,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매너만남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음.</p>

② 신고내용

- 17세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자기소개 프로필을 보고 신고하였다.
-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을 올린 후, 매너만남을 원한다는 자기소개를 보고 신고하였다.

③ 신고처리결과

민원인 정보			
신원인		단체명	심대여성인권센터
연락처	02-6348-1318	휴대전화	010-3232-1318
이메일	10up@hanmail.net	결과회신방법	이메일
주소	(-)		

신청내용	
URL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제목	성구매 및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플을 신고 합니다.
내용	해당 어플리케이션 특메이트 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안에서 ₩ 조건녀구하여, 17여(조건,바르만남가능해요), 조건남, 부산매너, 유쥬슈(ㄱㄱ), 톱글톱글(매너만남), 흑장미(매너만남 원해음 톱cal), 섹시걸00(출장만남, www.chanel85.com, 카톡:), 한송이(매너만남)

처리내역	
고유번호	493- 처리일시 2016-
처리결과	해당 신고정보는 관계법령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위반사실을 판단?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하여 다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17세 미성년자가 조건만남이 가능하다는 프로필을 올리고, 우측은 조건만남이라는 말을 대신하는 매너만남이라는 말을 사용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며 신고처리 결과를 [해당없음]으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2) 2015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

구분	총계	미유통	중복신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이행	해당없음
건	39	16	3	4	16

번호	종류	어플리케이션	처리결과
1	채팅	심톡	각하(중복신고)
2	채팅	앙톡	해당없음
3	채팅	톡앤	해당없음
4	채팅	깨톡	해당없음
5	채팅	심심채팅	해당없음
6	채팅	영톡	해당없음
7	채팅	즐톡	각하(중복신고)
8	랜덤채팅	섬-愛타는수다	각하(미유통)
9	채팅	마약팅	각하(중복신고)
10	랜덤채팅	낯선사람과의 대화	해당없음
11	채팅	엔조이톡	각하(미유통)
12	채팅	코코야팅	해당없음
13	채팅	채팅앤톡	각하(미유통)
14	채팅	앙스	해당없음
15	채팅	바로메이트	해당없음
16	채팅	미톡	각하(미유통)
17	채팅	별별톡	각하(미유통)
18	채팅	더설렘	각하(미유통)
19	랜덤채팅	커피타임	각하(미유통)
20	채팅	숨사탕	해당없음
21	채팅	심콩챗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 이행
22	채팅	채팅매니아	해당없음
23	채팅	네잎클로버 찾기	해당없음
24	채팅	수클럽	각하(미유통)
25	채팅	레몬시티	각하(미유통)
26	채팅	만남의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 이행
27	채팅	아마존걸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 이행

번호	종류	어플리케이션	처리결과
28	채팅	클럽2580	각하(미유통)
29	채팅	엔조이메이트	해당없음
30	채팅	라라채팅	각하(미유통)
31	랜덤채팅	GG톡	해당없음
32	채팅	다톡	해당없음
33	채팅	러브프렌즈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의무 이행
34	채팅	폰톡	각하(미유통)
35	채팅	데이트에스	각하(미유통)
36	채팅	10000naja	각하(미유통)
37	채팅	금톡	해당없음
38	채팅	싱글챗	각하(미유통)
39	채팅	짬톡	각하(미유통)

3) 2016년 1월~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

구분	총계	미유통*	중복신고	이용자 이용제한	내용확인불가	해당없음	처리중
건	165	19	18	18	3	43	64

* 미유통 : 신고 된 어플리케이션의 URL이 이미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신고가 접수되고 심의 및 처리가 되는 사이에 이미 업데이트 등으로 URL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URL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동일한 사용자 환경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1	2016년 2월	2016년 2월	앙톡		각하(중복신고)
2	2016년 2월	2016년 3월	82톡		해당없음
3	2016년 2월	2016년 3월	색톡		이용자 이용해지
4	2016년 2월	2016년 2월	꽃채팅		각하(중복신고)
5	2016년 2월	2016년 2월	즐톡s		각하(중복신고)
6	2016년 2월	2016년 2월	다톡		각하(중복신고)
7	2016년 2월	2016년 2월	톡앤		각하(중복신고)
8	2016년 2월	2016년 3월	드루와		해당없음
9	2016년 2월	2016년 2월	행운톡		각하(중복신고)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10	2016년 2월	2016년 3월	하이라이프		해당없음
11	2016년 2월	2016년 3월	숫톡		해당없음
12	2016년 2월	2016년 2월	영톡		각하(중복신고)
13	2016년 2월		앙스		
14	2016년 2월	2016년 3월	심톡		해당없음
15	2016년 3월	2016년 3월	숫톡		해당없음
16	2016년 3월	2016년 3월	당장만나		해당없음
17	2016년 3월	2016년 3월	앙톡2		각하(중복신고)
18	2016년 3월	2016년 3월	헤이팅		내용확인불가
19	2016년 3월	2016년 3월	알바신공		각하(중복신고)
20	2016년 3월	2016년 3월	썰톡		해당없음
21	2016년 3월	2016년 3월	심팅		내용확인불가
22	2016년 3월	2016년 3월	58톡		각하(중복신고)
23	2016년 3월	2016년 3월	sayhi		해당없음
24	2016년 3월	2016년 3월	애틀		각하(중복신고)
25	2016년 3월	2016년 4월	선빵		해당없음
26	2016년 3월	2016년 4월	숨사탕		해당없음
27	2016년 3월	2016년 4월	썸팅		해당없음
28	2016년 3월	2016년 4월	엔조이톡		해당없음
29	2016년 3월	2016년 3월	심심채팅		각하(중복신고)
30	2016년 3월	2016년 4월	원나잇		해당없음
31	2016년 3월	2016년 4월	여우톡		각하(미유통)
32	2016년 3월	2016년 4월	페이스톡		해당없음
33	2016년 3월	2016년 4월	플메톡		해당없음
34	2016년 3월	2016년 4월	채팅검		해당없음
35	2016년 3월	2016년 4월	친구톡톡		이용자 이용해지
36	2016년 3월	2016년 4월	센스굿메이트		각하(미유통)
37	2016년 3월	2016년 4월	만남의조건		각하(중복신고)
38	2016년 3월	2016년 4월	똥단배		해당없음
39	2016년 3월	2016년 4월	굿톡		이용자 이용해지
40	2016년 3월	2016년 4월	또톡		이용자 이용해지
41	2016년 3월	2016년 4월	러브애틀		각하(미유통)
42	2016년 3월	2016년 4월	리얼매칭		해당없음
43	2016년 3월	2016년 4월	러브프렌즈		각하(중복신고)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44	2016년 3월	2016년 4월	심톡		각하(중복신고)
45	2016년 4월	2016년 4월	핑크알바		각하(미유통)
46	2016년 4월	2016년 5월	캠팅		해당없음
47	2016년 4월	2016년 5월	아로마알바		해당없음
48	2016년 4월	2016년 5월	헬프톡		이용자 이용해지
49	2016년 4월	2016년 5월	즐팅		해당없음
50	2016년 4월	2016년 5월	쿨톡		해당없음
51	2016년 4월	2016년 5월	오챗		해당없음
52	2016년 4월	2016년 5월	온톡		해당없음
53	2016년 4월	2016년 4월	루비알바		각하(미유통)
54	2016년 4월	2016년 5월	소라채팅		해당없음
55	2016년 4월	2016년 5월	달톡		해당없음
56	2016년 4월	2016년 5월	공톡		해당없음
57	2016년 4월	2016년 5월	귀족알바		해당없음
58	2016년 4월	2016년 5월	프리챗		해당없음
59	2016년 4월	2016년 5월	컵스톡		이용자 이용해지
60	2016년 4월	2016년 5월	오프톡		해당없음
61	2016년 4월	2016년 5월	노블레스라인		해당없음
62	2016년 4월	2016년 5월	다톡		각하(미유통)
63	2016년 4월	2016년 4월	즐톡s		이용자 이용해지
64	2016년 4월	2016년 6월	시간박물관		해당없음
65	2016년 4월	2016년 4월	앙톡		이용자 이용해지
66	2016년 4월	2016년 4월	톡앤		각하(중복신고)
67	2016년 4월	2016년 6월	하이라이브		해당없음
68	2016년 4월	2016년 5월	셀톡		각하(미유통)
69	2016년 4월	2016년 4월	영톡		각하(중복신고)
70	2016년 5월	2016년 5월	러브프렌즈		각하(미유통)
71	2016년 5월	2016년 6월	엔조이톡		이용자 이용해지
72	2016년 5월	2016년 5월	온톡		각하(미유통)
73	2016년 5월	2016년 6월	즐팅		각하(미유통)
74	2016년 5월	2016년 5월	드루와		각하(미유통)
75	2016년 5월	2016년 5월	버디버디		각하(미유통)
76	2016년 5월	2016년 6월	알바신공		이용자 이용해지
77	2016년 5월	2016년 6월	색톡		해당없음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78	2016년 5월	2016년 6월	하이라이프		각하(미유통)
79	2016년 5월	2016년 6월	꽃채팅		각하(미유통)
80	2016년 5월	2016년 6월	굿밤		각하(미유통)
81	2016년 5월	2016년 6월	82톡		각하(미유통)
82	2016년 5월	2016년 6월	굿톡		각하(미유통)
83	2016년 5월	2016년 6월	심팅		이용자 이용해지
84	2016년 5월	2016년 6월	오짬		각하(미유통)
85	2016년 5월	2016년 6월	원나잇		각하(요건불비)
86	2016년 6월	2016년 9월	삐삐톡		이용자 이용해지
87	2016년 6월	2016년 9월	틱톡친구		이용자 이용해지
88	2016년 6월	2016년 7월	선빵		해당없음
89	2016년 6월	2016년 6월	양톡2		이용자 이용해지
90	2016년 6월	2016년 7월	프리챗		해당없음
91	2016년 6월	2016년 9월	헤이팅		이용자 이용해지
92	2016년 6월	2016년 6월	직구챗		각하(미유통)
93	2016년 6월	2016년 7월	톡메이트		해당없음
94	2016년 7월		버디버디		
95	2016년 7월		숨사탕톡		
96	2016년 7월		쌈씹		
97	2016년 7월	2016년 9월	아로마알바		각하(중복신고)
98	2016년 7월		일탈톡		
99	2016년 7월	2016년 8월	젤리톡		내용확인불가
100	2016년 7월		플메톡		
101	2016년 7월		즐톡s		
102	2016년 7월	2016년 8월	심톡G		해당없음
103	2016년 7월		코코아팅+		
104	2016년 7월		톡앤		
105	2016년 7월		즐톡톡		
106	2016년 7월		색톡		
107	2016년 7월	2016년 8월	캠팅		해당없음
108	2016년 7월		오렌지톡		
109	2016년 7월	2016년 9월	영톡		이용자 이용해지
110	2016년 7월	2016년 8월	알바신공		해당없음
111	2016년 7월	2016년 9월	당장만나		이용자 이용해지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112	2016년 7월		애틀		
113	2016년 7월	2016년 8월	앙톡		해당없음
114	2016년 7월		헤이팅		
115	2016년 7월	2016년 9월	앙스		이용자 이용해지
116	2016년 7월		엔조이톡		
117	2016년 7월		달콤톡		
118	2016년 7월		헬프톡		
119	2016년 7월		친구톡톡		
120	2016년 7월		삐삐톡		
121	2016년 8월		일탈톡		
122	2016년 8월		색톡		
123	2016년 8월		즐팅		
124	2016년 8월		즐톡톡		
125	2016년 8월		영톡		
126	2016년 8월		톡앤		
127	2016년 8월		즐톡s		
128	2016년 8월		폰톡		
129	2016년 8월		코코아팅		
130	2016년 8월		당장만나		
131	2016년 8월		버디버디		
132	2016년 8월		알바신공		
133	2016년 8월		프리챗		
134	2016년 8월		헤이팅		
135	2016년 8월		선빵		
136	2016년 8월		색톡		
137	2016년 8월		58톡+		
138	2016년 8월		온챗라이브		
139	2016년 8월		행톡		
140	2016년 8월		캔디톡		
141	2016년 9월		일탈톡		
142	2016년 9월		즐톡톡		
143	2016년 9월		선빵		
144	2016년 9월		헤이팅		
145	2016년 9월		알파걸스		

번호	신고날짜	처리날짜	어플리케이션	신고번호	처리결과
146	2016년 9월		삐삐톡		
147	2016년 9월		훔런톡		
148	2016년 9월		오렌지톡		
149	2016년 9월		달콤톡		
150	2016년 9월		즐톡s		
151	2016년 9월		톡앤		
152	2016년 9월		앤톡		
153	2016년 9월		헬프톡		
154	2016년 9월		일탈톡		
155	2016년 9월		하이라이브		
156	2016년 9월		헤이팅		
157	2016년 9월		틱톡친구		
158	2016년 9월		선빵		
159	2016년 9월		코코아팅		
160	2016년 9월		색톡		
161	2016년 9월		행운톡		
162	2016년 9월		오렌지톡		
163	2016년 9월		폰톡s		
164	2016년 9월		달콤톡		
165	2016년 9월		삐삐톡		

4) 실효성 없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채팅 어플리케이션 제재 방침의 실태

2015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 알선 어플리케이션 신고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미유통 16개, 해당없음 16개, 중복신고 3개로 89.74%의 신고가 사실상 각하되었다. 2016년 3분기까지 또한 처리중인 신고 건수를 제외하면 미유통 19개, 중복신고 18개, 내용확인불가 3개, 해당없음 43개로 83%의 신고가 각하되었다.

2015년 대비 2016년 신고는 약 323% 늘어났으나, 신고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각하 비율은 크게 줄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제재의 변화는 없다. 즉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자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한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방침 및 규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및 알선 행위를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다.

2015년 신고 처리결과 41%, 2016년 신고 처리결과 43%(처리중 제외)를 차지하는 ‘해당없음’은 신고 자료가 신고 내용(성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매매, 17살, 17녀, 몸무게, 키, 콘돔’ 등 정확히 성매매를 나타내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약어를 이용한 간단한 조건만을 명시, 1:1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성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으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없다.

2015년 채팅 어플리케이션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볼 때, 각하 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결과는 4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이행’이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해 본 결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조장, 알선 등에 이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규제방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을 성폭력, 성착취 현장으로 유인하는 데에 있어 초기 경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이나 인터넷 카페/채팅을 규제할 관련 법령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재 수단조차 전혀 없는 실정이다. IT 환경의 빠른 변화는 성매매 유인 환경을 인터넷 채팅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옮겨놓았으며, 최근에는 소통형 영상 채팅, 개인방송 형식으로 이동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듯 빠르게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유인, 알선, 조장 환경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령은 음란사이트나 음란물을 모니터링 또는 신고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음란물로 판정이 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신고를 각하시키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구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쇄되어 진다고 하더라도 정보를 경찰과 연계하여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알선자나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사이트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는 IP 주소만 옮기면 아무런 문제도 없으며, 알선자나 구매자는 어떠한 흠결도 없이 바뀐 주소로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니 방통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정될 법률은 우선 채팅 사이트나 채팅(영상) 어플리케이션, 개인 방송 등의 운영자가 성매매 정보의 알선과 성매매 조장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성매매 알선 세력이라는 전제가 분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후 사이트, 어플, 개인 방송 등 사이버 성매매 환경의 폐쇄와 동시에 반드시 경찰의 단속과 수사가 함께 이루어져 성구매자, 알선업자에 이르기까지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사이버 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실행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향후 사이버상 성매매 시장은 현실세계보다 더욱 확대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사이버 환경에 쉽게 부응하는 아동청소년이 될 수 있어 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IT 기술적 진보와 함께 사이버상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이 가능한 전문 영역을 포함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현재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는 좋은 실례로 볼 수 있다.

셋째, 빠른 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 발전시켜야 한다. 단기간의 사업적 지원보다는 안정적인 기구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청소년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령과 제재수단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영국의 ‘그루밍법’과 네덜란드의 ‘10살 가상소녀 스위티’ 프로젝트는 시사점이 크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채팅 사이트나 앱 운영자까지 포함시켜 성매매 유인이나 정보제공이 발견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한다든지, 방송통신사업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KT나 SK 등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그루밍법은 영국의 ‘아동착취 및 온라인보호센터: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ntre’가 그루밍(grooming)을 신종 사이버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서 명칭을 따온 것이며 그 핵심적 내용은 ‘성인이 채팅을 통해 만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설사 만나지 않았더라도 유인, 제안하는 행위 등 만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아동후원기구인 ‘테르 데 줌프’에서는 빈국 아동들을 상대로 부국 남성들의 웹캠 섹스를 막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 실물과 흡사한 ‘스위티’(10세의 필리핀 소녀)라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냈다. ‘스위티’로 화상채팅 서비스를 했더니 10주 동안 71개국, 2만여 명이 웹 카메라를 통해 ‘스위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단체는 이 중 천명의 신상정보를 인터폴로 넘겨 각국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실제 소녀가 아닌 가상 인

물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실제 범법자들을 검거하였는데, 이 캠페인은 아동·청소년 사이버 성매매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된 어플리케이션 규제 방법

– 형사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차민정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변호사)

–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정안

배수진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 / 법무법인 천지인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목차

I. 서언

II. 형사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1. 형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 형사법적 규제 현황
 -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3. 해외 입법례 검토
 - 가. 일본의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나. 기타 해외 입법례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행위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
4. 기존에 발의된 국내 개정 법률안 :

2012년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가. 이노근 개정 법률안 내용
 - 나. 이노근 개정 법률안 폐기 사유 및 시사점
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안 제안
 - 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 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개정 목적과 취지
 - 다. 개정안

III.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정안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행정적 제재 방안
2. 현행 행정규제 및 그 문제점
 -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 나. 매체물 등급 구분제도 및 그 외 관련규정
 -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 게시
3. 해외 입법례 검토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등 관계자의 보고의무 부과
 - 가. 유럽 연합
 - 나. 캐나다 입법례
 - 다. 국제실증착취아동센터 모델법률
4. 개선방안
 -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 지정을 확대해야 함
 - 나. 등급 구분 제도 개선
 - 다. 경고 문구 게시 대상 확대
 - 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의무 활성화
 - 마. 본인 확인 절차 대상의 확대
 -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 사. 대화시간 나이차이 기준으로 접근 금지

IV. 결어

I. 서언

청소년 성매매는 1990년대부터 ‘원조교제’라는 명칭으로 언론에 소개돼 전국민을 경악케 하였다. 이후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성매매 사실을 은폐하거나 성매매를 합법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죄책감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원조교제는 불법적인 청소년 성매매라는 인식이 전환되고 확산되었다. 그러나, IT강국답게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근래 청소년성매매알선 형태가 업소형에서 사이버상의 조건만남형식으로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상의 성매매 알선은 시·공간의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성매매 시장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하였다. 뿐만 아니라 업소 중심의 현재 경찰 단속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 업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변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점, 성구매자가 발각될 염려가 없는 성매매 대상과 장소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성매매를 합법적인 계약으로 착각한 나머지 성매매 행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덜 느끼게 된다는 점, 업소형 성매매여성에 비해 저연령의 아동청소년도 쉽게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사이버상 조건만남이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알선은 앞으로 더욱더 확산될 위험에 놓여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표면적으로 친구만들기를 표방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자연스러운 일로 여기게 하므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업소에 의한 성매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가입절차상 연령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지도 않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1:1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공공연하게 성매매 알선 및 성구매의 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이를 방치·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극에 치달았으나, 이러한 운영자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성매매를 더욱 은밀하고 갖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장되고 확산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발본색원하고, 왜곡된 성문화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떤 때보다도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적절히 통제하고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팅 애플

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심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에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형사법적 규제 현황 및 행정법적 제재 현황을 알아보고, 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형사적, 행정법적 규제 관련 법률안을 살펴보겠다.

II. 형사법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1. 형사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그 폐해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구매하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운영자는 그 폐해를 알고서도 아동·청소년과 성구매자를 연결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성구매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체계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 규정의 해석상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규제하고 운영자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를 위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관련 규정과 적용가능성을 정리해보고, 해외 입법례 및 이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률안을 검토한 후 새로운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형사법적 규제 현황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된 채팅 어플리케이션 규제와 관련하여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는 현행법 규정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와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있다(그 외에 행정제재와 혼합된 내용은 ‘Ⅲ.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검토한다).

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제1호)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제3호)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형사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은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이나 성구매자들의 주요통로로 이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어 문제가 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에 따라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직접적인 업으로’하거나 ‘운영자가 직접’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표면적으로는 친구 만들기를 표방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나 관리자가 아닌 이용자가 직접 성매매 정보를 업로드하고 전달하며 공유하기 때문에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별도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에 대한 방조범(성매수 또는 성매매 알선을 한 행위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 법리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판례는 저작권법 침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방조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해당 판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방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저작권법 침해행위와는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방조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사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조죄는 그 죄를 간접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낮아진다는 불합리함이 존재하게 되며, 방조범의 법리상 어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체를 정당화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전송 혹은 이용을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략)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위 조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조치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구매에 이용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채팅 내에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유도하는 글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¹⁾으로 정의하고 있어,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대화창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강요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악용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운영을 형사적으로 규제하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규제 관련조항들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강요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고 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주로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한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법적 규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1)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해외 입법례 검토

가. 일본의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본의 경우,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2003년 6월 13일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위 법률은 “1)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²⁾에 등록하고, 2) 18세 미만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하고, 3)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 및 유발하는 글의 게시를 엄격히 금지하며,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 성매매 유발 정보의 유통과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관련사항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 행정부처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과는 별도로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를 다룬 점, 온라인 사이트 외 채팅애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도 규제 가능하도록 한 점 등에서 한국의 현행 규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³⁾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에 기인하는 아동매춘 기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경시청’은 일본 도쿄 도를 관할하는 경찰 본부입니다.

3) 해외법률소개 제256호,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4.12.

(일본)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³⁾

제3조(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등의 책무)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 및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배려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방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게 하기 위한 교육 및 개발에 노력하는 동시에 아동에 의한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이용 방지에 이바지하는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자, 국민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관련된 활동으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제6조 누구든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성교 등[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타인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촉하거나 타인에게 자기의 성기 등에 접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2. 타인(아동을 제외한다)을 아동과의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3. 대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시하여 아동을 이성교제(성교 등을 제외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4. 대상을 받는 것을 제시하여 타인을 아동과의 이성교제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것.

제7조(이용 금지의 명시 등) 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 대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때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이 해당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하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아동이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일본)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³⁾

제8조(아동이 아닌 것의 확인)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이러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아동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해당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실시하는 성명, 연령 기타 본인을 특정하는 사항의 확인(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에 한한다)을 받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에 전달하는 때
2.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의 요구에 따라 전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로부터의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해당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에게 전달하는 때
3. 전 2호의 규정에 의해 그 이성교제에 관한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에 관련된 제1호에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때
4. 제1호 규정하는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의 전달을 받은 다른 이성교제 희망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때

제10호 (시정명령) 도도부현공안위원회(이하 “공안위원회”라 한다)는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게 해당 위반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 또는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이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나. 기타 해외 입법례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행위 등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 접근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

1) 호주 입법례

연방국가인 호주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혹은 다른 형태의 소통 방식)으로 아동을 꼬어내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부적절한 자료를 보내거나 접촉을 시도하여 아동을 꼬어내는(grooming)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호주 연방법 형법 제472.27조
<p>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16세 이하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는 아래와 같은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다른 사람에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통하고; (b) 이 때 상대방과 성적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하며; (c) 상대방이 16세 이하인(혹은 16세 이하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d) 그리고 전송인이 18세 이상인 경우
형법(ACT주) 66조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아동을 타락시키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터넷을 이용해 16세 이하의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행위 참여를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 (a) 초범은 7년 이하의 징역, 재범 이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퀸스랜드 주) : 218조A(1)조 인터넷 등을 통해 16세 이하 아동을 구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퀸스랜드 주 내 혹은 밖에서 성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16세 이하 아동, 혹은 16세 이하 아동이라고 생각되는 성인을 구하기 위해 전자 통신을 이용하는 성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만일 이 성인이 12세 이하의 아동을 구할 때에는 가중 처벌된다(14년 이하). <p>(이 법에서 전자통신은 이메일, 인터넷 채팅방, sms 메시지, 실시간 오디오 비디오 또는 다른 형태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을 의미함)</p>

2) 미국 입법례

전통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에는 대부분의 주에 인터넷을 이용해 성적인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채팅과 이메일 등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인터넷 루어링(luring)’, 또는 그루밍(grooming)으로 처벌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 미주리 주, 노스 캐롤라이나 주,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고자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고 있다.

2014 코네티컷 일반법 53a - 형사법 제90a조 (Sec. 53a-90a.)

미성년자의 유인

(a)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interactive computer service)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설득, 유도, 유인, 또는 강제하여 성매매 또는 성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는 자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에 해당하며 처벌된다. 이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는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 제공 서비스, 시스템, 소프트웨어, 특히 인터넷을 이용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와 시스템과 도서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1.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초범의 경우 class D 중범죄에 해당하며, 재범의 경우 class C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후 범죄가 계속될 경우에는 class B 중범죄로 처벌한다.

2012 플로리다 일반법 XLVI 형법 제0135조

847.0135 컴퓨터 음란물; 컴퓨터의 사용 금지; 아동을 만나러 가는 행위; 벌칙

(3) 컴퓨터 서비스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a) 아동 또는 행위자가 아동이라 믿은 자와 불법적인 성 행위를 하기 위하여 유혹, 유인, 유도, 유혹 또는 그 시도를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컴퓨터 온라인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지역 게시판, 기타 전송 또는 저장 매체를 이용한 자는 3급 중범죄(third degree felony)를 범한 것에 해당한다.

노스 캐롤라이나 일반법 14-202.3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를 이용해 불법 성 행위를 하기 위해 아동을 유혹함

(a) 범죄 행위 - 컴퓨터 또는 다른 전자 장비를 이용하여 16세 미만이며, 본인보다 5세 이상 어린 아동과 성 행위를 하거나 아동과 성 행위를 할 의도를 가지고 유인, 강제하거나 아동에게 충고, 지시, 명령하여 아동을 만난 자는 아동을 유혹한 자에 해당함.

4. 기존에 발의된 국내 개정 법률안 : 2012년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가. 이노근 개정 법률안 내용

국내에서는 2012년 이노근 의원 외 13인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이노근 개정 법률안’이라 한다)을 발의한 바 있다.

이노근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경찰청의 청소년 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 성매매는 528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인터넷을 경로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414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최근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청소년이 관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의 만남인 경우에 대가의 제공 조건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 성매매 암시·유발 정보에 포함시킬 것(안 제10조의2 신설)
- 2)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 정보를 발견, 삭제, 전송중지, 중단 등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10조의3 신설)
- 3) 아동·청소년은 불특정 사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안 제10조의4 신설)

이노근 개정 법률안은 ‘한국보다 앞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이러한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게는 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매

매 유발환경으로부터 국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노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2(청소년 성매매 암시·유발 정보의 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 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응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2.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의하는 정보
 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이성간 만남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4.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성간 만남의 상대방이 될 것을 제의하는 정보
 5.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간 만남을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
 6. 아동·청소년이 불특정 다수의 이성의 사람을 대상으로 만남을 제의하는 정보
-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에는 사투리·비속어·약어·은어, 문자·그림·사진·동영상 등 해당 정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10조의 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암시·유발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가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로 인식되는 정보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제10조의 4(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의 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요자간 대화서비스(문자, 음성, 화상 등의 수단을 불문하고 이용자 간의 의사전달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대화서비스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이노근 개정 법률안 폐기 사유 및 시사점

이노근 개정 법률안은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바, 폐기 사유가 시사하는 점을 살펴 개정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노근 개정 법률안 제10조의 2의 폐기사유는 성매매 암시·유발·유통금지 정보 범위의 적절성, 명확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매매와 무관한 만남이나 청소년간 단순 만남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노근 개정 법률안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 성매매와 무관한 만남이나 청소년 간 단순 만남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지적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 및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할 필요성은 매우 높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노근 개정 법률안은 이와 관련하여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노근 개정 법률안 제10조의 3의 폐기사유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채팅서비스 내용은 사인 간 통신에 해당되므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했을 시 삭제토록 조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노근 개정 법률안 제10조의 3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 정보(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대한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위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살 것을 제의하는 정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할 것을 제의하는 정보'등에 대해서만 조치의무를 규정하여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노근 의원 개정안 제10조의4 규정 폐기 사유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팅 서비스 자체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폐기 사유가 상당하고, 형사법적인 규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 등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안 제안

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현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의 성교 행위 등을 구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으로는 이를 형사적으로 규제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자와 이를 방임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청소년성보호법에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개정 목적과 취지

청소년성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개정의 목적과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제13조의 2 신설 관련

청소년성보호법에 개정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정보 유통'과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위한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자 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항)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제2항)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각 목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성교 행위 등이라 합니다)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보를 유통하여 호기심 많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제1조), 국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제4조), 위와 같은 정보 유통 자체를 금지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대가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교 행위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데 13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므로(형법 제305조) 대가가 전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교 행위 등을 위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 또는 강요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 4)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2)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개정 관련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에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정보를 ‘유통’한 자를 추가하고자 한다.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자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정보가 유통된다는 점을 알면서 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제17조의 2 신설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개정 관련

청소년성보호법에 개정안 제17조의 2를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정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위한 정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살 것을 제의하는 정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할 것을 제의하는 정보’,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이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팔기 위해 작성된 글 등’이라 함)의 발견, 차단·삭제, 전송 중지·중단 등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한다.

최근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의 장이 되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조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조치를 취하게 하고,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 전송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

거나 팔기 위해 작성된 글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는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즉시 삭제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팔기 위해 작성된 글 등을 차단하고 수사 종결 이후에 삭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

현행법	개정안
<p>제2조(정의) 1호 내지 9호까지 규정</p>	<p><신설> 제2조(정의) 10.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에는 사투리·비속어·약어·은어, 문자·그림·사진·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 또는 이를 권유·강요하거나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유인 또는 이를 권유·강요하는 의미를 갖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p>
<p>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신설> 제13조의 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 유통 금지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기 위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p>

현행법	개정안
	<p>년을 유인하거나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p>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 또는 유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p>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p>	<p><신설></p> <p>제17조의 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p>

현행법	개정안
<p>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 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차단한 후 수사종결 후에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리 하지 아니하였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살 것을 제의하는 정보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제의하는 정보 4.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현행법	개정안
<p>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p> <p>① 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p>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등)</p> <p>① 법 제17조 제1항, 제17조의 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 2 각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 2 각호 정보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

현행법	개정안
<p>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p> <p>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 2 각호 정보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p> <p>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 2 각호 정보로 판단하기 어려운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제17조의 2 각호 정보를 발견하고 차단·삭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Ⅲ. 행정법적 제재 현황 및 개정안

1. 채팅 어플리케이션 행정적 제재 방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이용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행정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어려운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연령등급을 구분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행정벌을 가하는 방안이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행정법적으로 제재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현행 행정규제 및 그 문제점

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과 ‘매체물 등급구분’이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보호법 제9조와 이에 따른 시행령 제9조의 [별표2] 기준에 따라 심

의하여 지정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에는 동법 제13조에서부터 제23조까지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 ‘포장 및 포장에 준하는 조치의무’, ‘판매 금지 및 판매 전 나이 확인 의무’ 등 일정한 행정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행정규제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의 시정명령, 제54조의 과징금 등의 행정벌이 가능하며 제58조, 제59조에 따라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대부분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행정규제 적용대상으로 분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게시한 고시목록⁵⁾에 따르면 2016년 7월 6일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어플리케이션 항목의 461개 어플리케이션 중 단 6개만이 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중개에 악용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관련 행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문제가 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등록·운영과정의 특성상 별다른 제약 없이 유사한 대체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청소년보호법상의 행정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과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p>제2조(정의) (중략)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p> <p>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p>
<p>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u>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u>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p>

5)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인터넷/어플리케이션) 고시목록(2016년 7월 6일 기준)

-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중략)
 - ⑤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작·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된 매체물
 2. 매체물 각각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
 - ⑥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결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기준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유해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표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제9조 관련)

1. (중략)
2. 개별 심의 기준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

-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 태도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과 청소년 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 하는 것
-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효과

제13조(청소년유해표시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인 경우: 해당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포장 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장할 수 없는 것은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포장의 무자, 포장방법, 그 밖에 포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공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발행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제작자·발행자나 유통행위자 등의 업체명·대표자명·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경우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정보 공표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 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한 자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징금)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제2호사목·아목에 따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심의 기준에 저촉되는 매체물을 제13조 및 제14조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하였거나 유통 중일 때에는 그 매체물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중략)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생략)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5조(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매체물,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및 같은 호 자목에 따른 전자출판물 등 전자적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 이용자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매체물의 정보를 통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여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방법, 그 밖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매체물 등급 구분제도 및 그 외 관련규정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행정제재 방안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매체물 등급 구분’이 있다.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해서 청소년의 나이별 이용 가능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 등급 구분’

제8조(등급 구분 등)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8조(등급 구분의 종류·방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다만, 각 심의기관에서 소관 매체물에 대하여 별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9세 이상 가: 9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2. 12세 이상 가: 12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3. 15세 이상 가: 15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물
-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의 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정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온라인 게임 어플리케이션 이외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관련 심의기관에서 따로 연령 구분을 하지 않고 등급구분에 있어 ‘어플리케이션 오픈 마켓 운영자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등급 구분제도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관련 규정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가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제2항에서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상 관련 규정

제4조(사회의 책임) ①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②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서의 효력은 갖지 못하고 있다.

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 게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규제 외의 또 다른 행정 제재 수단으로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 게시’가 있다. 이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특정 문구를 디지털콘텐츠에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벌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3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동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고시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게시물의 내용, 크기, 게시 방법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위반 시 효과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략)
 2.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하여 게시물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그러나 경고문구 게시 의무 부과 대상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중 대부분은 게시 의무 부과 대상으로 구분되지 않게 된다. 게시 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부과대상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상당수

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지정조차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볼 때,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3. 해외 입법례 검토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등 관계자의 보고의무 부과

가. 유럽 연합

2001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세계화에 따른 범죄의 국제화 현상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제정하였다. 협약 제9조는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사실적인 영상, 또는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을 포함한 아동음란물을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아동 음란물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EU Directive 2011/92/EU Combating Child Pornography)을 마련, 유럽연합 회원국 내 호스팅되는 아동 음란물을 포함 또는 유포하는 웹페이지에 대해서는 이를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회원국 밖의 웹페이지의 경우 삭제를 위해 노력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아동과 접촉하는 행위와 아동 성매매를 하는 행위는 즉시 처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그리고 아동 성매매와 아동 성 착취 피해자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캐나다 입법례

아동 음란물 관련, 캐나다는 2011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아동 음란물의 의무 보고에 관한 법(The Act respecting the Mandatory Reporting of Internet Child Pornography by Persons who Provide an Internet Service 2011)을 제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의 제3조는 “인터넷 서

비스 제공자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아동음란물 등 아동과 관계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경찰 등 관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아동 음란물의 의무 보고에 관한 법 제3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아동 음란물 등 아동 관련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경찰 등 관계 담당자 등에게 가능한 빨리 이를 알려야 한다.

다.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 모델법률

아동의 성 착취 및 유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NGO단체인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는 온라인을 통한 아동의 유인, 초대, 설득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연구하여, 각 국가에서 법 개정 시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 행위를 위해 아동을 유혹하는 ‘그루밍(grooming)’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아동 성 범죄자들은 아동의 신뢰를 얻은 후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판 및 채팅을 이용하므로, 온라인 그루밍 또는 온라인 유혹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잠재적인 아동 성 범죄자들을 식별하고 아동의 희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신용카드사, 은행과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기관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관련 행위에 대해 알 수가 없으며, 인터넷은 아동 성 매매의 주요 수단인 만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및 차단(takedown)의 무는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및 기타 지불 수단의 발달로 인해 아동 음란물, 또는 아동의 성을 구매하는 일이 용이해졌음을 염두에 두어 금융기관이 이를 숙지토록 하고, 사법당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개선방안

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 지정을 확대해야 함

현 제도하에서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비율은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고시를 살펴보면,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62건의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제목 그 자체에 “야동”, “성인”, “19금” 등이 표시되거나 성인물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원인은 “선정성”이나 “청소년유해업소”를 들고 있다⁶⁾. 즉,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1건도 찾아볼 수 없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만을 확인할 수 있다.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신고된 어플리케이션은 [미유통]을 이유로 신고가 각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위반유형별 조치현황⁷⁾

(단위 : 건)

구분	불법대출	의약품 불법 판매	음란 및 성매매	불법명의 거래	담배 불법 판매	도박	마약류 매매	기타	계
7~8월	231	178	154	46	30	11	2	7	659
2~5월	17	255	226	20	30	18	18	9	593

※ 기타 : 문서위조, 장기매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참조

7) 2016. 9. 2.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자료

위 조치현황에 의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어플리케이션은 1위가 불법대출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고, 2위가 의약품 불법판매 관련 어플리케이션이며, 3위가 성매매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차지하고 있다. 1, 2위를 차지한 내용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비중이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다소 의아한 결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이래, 최근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는 있으나, 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나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들에게 청소년 성매매로의 유입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낮은 이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업자나 청소년의 자유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장려한다면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성인간 만남이 아니라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의 장이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제재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상정한 목표에 비추어 본다면,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결코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나 청소년의 기본권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이나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등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요지를 보면,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을 성매매로 이끄는 주범이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09. 11. 12. 선고 2009구합20564 판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를 청소년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4호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사안에서, 그 고시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나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가 게임아이템의 거래를 손쉽게 하고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사행성을 가진다로 볼 수 있으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게임아이템거래가 가능한 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 불가피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고, 헌법보다 앞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외관상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산업이 번창하는 것은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하여 산업구조를 기형화시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한 것이다.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행위로 볼 수 없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등 사회 전반의 성풍속과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참조).

이렇듯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한 유입 경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유입을 전면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운영자나 청소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공익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현행법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권한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채팅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권한을 단일 기관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존재마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고,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이거나(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또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별표 2. 개별심의기준 참조)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고, 각 심의기관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각 심의기관이 심의하지 않은 매체물이 유통될 경우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하여야 한다.

현행법	개정안
<p>청소년보호법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각 심의기관에서 심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제 7조 ① (중략)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각 심의기관이 심의할 수 있다.</p> <p>③ (중략) 3호 신설</p> <p>3.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매체물</p>

현행법	개정안
<p>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p> <p>1. 각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 2. 청소년에게 유해한지에 대하여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p>	

나. 등급 구분 제도 개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그 매체물의 특성, 청소년 유해의 정도, 이용시간과 장소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 청소년의 나이에 따른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청소년 보호법 제8조). 각 심의기관에서 매체물에 대한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9세 이상 가, 12세 이상 가, 15세 이상 가 등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정보통신상에서 청소년 보호정책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학부모나 사이트개설자 모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2009년까지 자율등급표시한 국내 DB는 4,427건에 그치고 있다⁸⁾.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처럼 개개인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는 것은 청소년 보호에 미흡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청소년보호법상 등급 구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신인터넷매체물에 대한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등급 구분의 대상, 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구분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하여 위원회 내부의 분명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방안(김현수, 김정환) 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을 위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활용” 참조

친구만들기를 표방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것이 사업자나 청소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본다면, 차선책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등급 구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등급 분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등급 분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급분류를 통해 무분별하게 출현하고 사라지는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	개정안
<p>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① 제3조의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연령시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나. 폭력적·선정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2. 7세이상시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나.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3. 12세이상시청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 	<p>어플리케이션⁹⁾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신설 (별지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참조)</p>

현행법	개정안
<p>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정지도가 필요한 것</p> <p>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p> <p>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p> <p>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p> <p>4. 15세이상시청가</p> <p>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정지도가 필요한 것</p> <p>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p> <p>다. <u>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u></p> <p>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p> <p>5. 19세이상시청가</p> <p>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p> <p>나. 살생묘사 및 유혈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p> <p>다. <u>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u></p> <p>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p>	

현행법	개정안
<p>동작 등이 사용된 것</p> <p>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p> <p>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p>	

청소년의 성운리를 왜곡하거나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될 우려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대상으로 삼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인권을 위해 선정성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우려되는 대화의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는 성매매의 변형된 은어로 사용되고 있고, 최근 조건만남이라는 단어도 여러 제재를 받게 되자, “매너만남”이라는 단어로 전환되고 있다. 조건만남이나 매너만남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문어적 의미에 한정한다면, 청소년이나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불가능해지고, 이는 통신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청소년에게 성운리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성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제재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으나, 더 높은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다. 경고 문구 게시 대상 확대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하면서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12호 제1항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9)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매체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으로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못한 대부분의 친구만들기를 표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위 경고문구를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야만 위 경고 문구를 게시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성구매자가 미성년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알선 또는 성구매 가능성이 있는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게시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성구매자가 대부분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조건만남이나 매너만남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명칭이나 명목 및 이용하는 사람의 나이를 불문하고 성매매는 불법이고 처벌된다는 경고 문구는 반드시 게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을 보면, 개인 간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라도 성을 매매하기로 하는 이상 이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경고 문구를 게시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중에서 게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를 거론할 수 있는 모든 통신인터넷 환경에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안>

현행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u>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 제의하는 내용의</u> 디지털콘텐츠의 대

현행법	개정안
<p>텔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p>	<p>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p>

〈2안〉

현행 시행령	개정안
<p>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u>청소년 보호법</u>」 제2조제3호의 <u>청소년유해매체물</u>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특정 또는 익명의 이용자 간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에 설치·운영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에 의한 대화기능이 있을 것. 다만, 음성 대화기능만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으로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 	<p>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디지털 콘텐츠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옆 밑줄 삭제, 나머지 동일)</p>

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 의무 활성화

청소년이 유해정보 및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2015. 4. 16. 시행되었다.

아직까지 이러한 차단수단으로 인해 유해정보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물은 없다. 그러나, 위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음란정보 접근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근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차단수단 제공의무화를 통한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통신인터넷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려면, 친구만들기를 표방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단수단이 설치된 단말기로부터의 접속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는 비로소 성매매 조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	개정안
<p>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p> <p>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13. (중략) 가. 「저작권법」 제104조 및 <u>회원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u></p> <p>제32조의 9 신설 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제32조 7에 따라 차단수단이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등에의 접속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속감지수단 제공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마. 본인 확인 절차 대상의 확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일부 매체물¹⁰⁾에 대하여 이용하려는 자에 대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매체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로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절차로부터 자유롭다.

게임이나 음반, 영화, 공연 등에 대하여는 성(性)과 관련된 것으로 약간의 의심만 보여도, 그 즉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른 매체물과 달리,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1:1 대화 방식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고, 그런 특성으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의 시장으로 유입되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고 있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위험성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임, 음반, 영화, 공연 등의 위험성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속도가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입되어 이용당하는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 결정이 활성화될 때까지만이라도, 성매매와 직결된다고 하더라도

10)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과연이 아닌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므로,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할 의무를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전부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중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	개정안
<p>청소년보호법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u>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u>회원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화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매체물 중</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성매매를 유발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내용의 대화서비스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실명, 연령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대화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불건전 만남이나 불건전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현행법	신설 및 개정안
<p>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의 3 신설 ① 불특정 이용자 간 서로의 신상 공개 없이도 접속과 동시에 무작위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채팅 중 실질적으로 조건 만남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채팅을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대화서비스를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현행법	신설 및 개정안
	<p>② 제1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67조(과태료) ①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 3 제2항을 위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사. 대화자간 나이차이 기준으로 접근 금지

미국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유인, 유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엄격하게 형사 처벌하고, 특히 상기한바와 같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자신과 5세 이상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유인, 유혹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고 있다.

성인간 성매매는 차치하고, 청소년을 성매매의 수렁에서 구제하길 원한다면, 대화자간 나이차이가 5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대화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처럼 5세 이상 대화자 사이에 성 행위를 유인, 유혹하는 경우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아직 수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5세 이상 차이가 나는 대화자 사이에 대화를 전면 규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IV. 결어

이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의 양상과 피해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그 규제와 처벌에 한계가 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채팅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보다 상위의 가치인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제공자에게 사회가 합의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한 정보 유통 행위 및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교 행위 등을 위한 정보 유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은 시급하다.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가가 전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교 행위 등을 위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유인하거나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권유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경우도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므로, 선진국 입성을 코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

행정적 제재 방안으로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과 '매체물 등급 구분' 청소년성보호법상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경고문구 게시' 등이 있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부분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경고문구 게시 의무 부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약 없이 유사한 대체 어플리케이션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 제도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면 된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빨리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정에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단일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와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청소

년보호법상의 등급 구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급 구분의 대상, 등급 구분의 기준, 등급 구분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경고문구도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방임하는 운영자의 처벌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운영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차단 수단이 설치된 단말기로부터 접속을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도록 하고, 사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 역시 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순수하게 친구만들기를 목적으로 창안된 것인지는 의문이나, 처음에 만들어진 의도와 무관하게 현재 무분별한 성매매 알선의 장으로 악용되고 있고, 성매매 조장의 장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안이하게 방임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어플리케이션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성착취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존엄과 인권,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존속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별지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6. 2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22호

2014. 1.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9>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급분류 및 표시

제3조(등급분류)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모든연령시청가”라 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을 말한다.
2. “7세이상시청가”라 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3. “12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4. “15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정지도가 필요한 등급을 말한다.

5. “19세이상시청가”라 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을 말한다.

제4조(등급분류기준) ① 제3조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9>

1. 모든연령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이 취학전(7세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지 않은 것
- 나. 폭력작성성적 표현 또는 부적절한 언어사용이 없는 것
-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과 관련하여 모든 연령의 시청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것

2. 7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7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정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묘사가 가상의 세계에서 다루어지더라도 폭력의 방법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것
- 다. 일상적인 애정표현을 넘어서는 신체의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없는 것
- 라. 어린이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3. 12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12세미만의 어린이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정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을 갈등해결을 위한 긍정적 수단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묘사가 없으며, 각각의 폭력묘사는 청소년을 자극하거나 모방을 유발할 정도로 구체적이지 아니한 것
- 다. 입맞춤 또는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묘사가 있더라도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이지 아니한 것
- 라. 청소년의 바른 언어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은어, 속어, 저속한 유행어 등이 사용되지 아니한 것

4. 15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15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

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

- 나. 폭력묘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정의에 위배하여 정당화되거나 미화되지 아니한 것
- 다. 성적묘사가 건전한 남녀관계의 애정표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신체의 부분 노출, 암시적인 성적 접촉 및 대화 내용이 선정성을 띠지 아니한 것
- 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악의 없는 욕설, 은어, 속어, 유행어 등이 건전한 언어습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것

5. 19세이상시청가

- 가.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
- 나. 살생묘사 및 유희장면 등 강도 높은 폭력장면이 현실적이거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
- 다. 신체의 부분 노출, 직접적암시적인 성적 접촉, 성행위 등 선정적인 표현이 구체적이거나 노골적으로 묘사된 것
- 라. 모욕적인 언어나 욕설, 저주, 저속한 동작 등이 사용된 것

② 방송사업자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 이어야 한다.
-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4. 15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5.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제6조(등급 사전고지)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9>

[제목개정 2014.1.9]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도 프로그램
2.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3. 생활정보 프로그램
4.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5.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6.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7.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8.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0조(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등급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을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게 등급분류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22호, 2008.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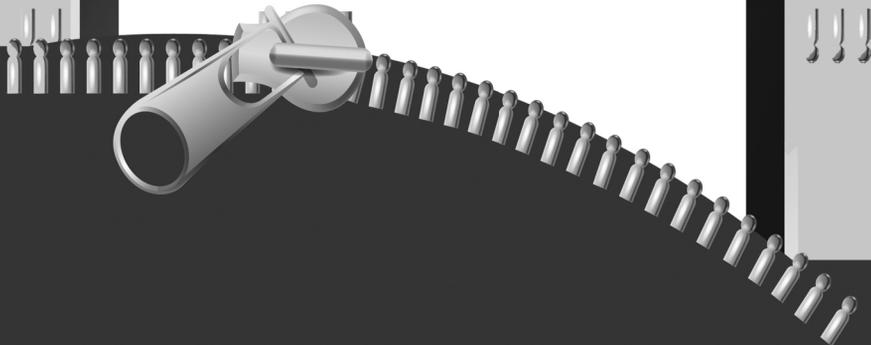
부 칙 <제105호, 20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론 1 이현숙 (사)탁틴내일 대표)
- 토론 2 안성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 여성가족부법률자문관 파견 검사)
- 토론 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 토론 4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 팀장)
- 토론 5 배진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변호사)
- 토론 6 차인순 (국회입법심의관)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
이렇게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1

이현숙
(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접촉하는 것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아동포르노그래피와 성매매에 거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는 그 심각성에 비해 별다른 대책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랜덤 채팅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들이 느끼는 현실 인식과 대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며 좀 더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사업 운영에서 아동 대상 성적 착취량 증가에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조직 또는 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 집행기관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이거나 법적의무에 의해서) 보고하지 않으면, 다수의 아동 성적 착취 범죄에 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은 아동 성적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매개 수단이므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성 범죄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법 집행기관에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보고 및 차단(takedown)” 의

무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부과되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경찰 및 기타 법 집행 기관에 아동 성범죄에 신고하는 등의 여타 신고를 실시할 경우 법기관의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법 집행 기관에 완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청법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에 추가하거나 제34조의 2를 신설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제13조 2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에 대한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제문에는 제17조의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제17조를 개정하여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과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	개정안
<p>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차단한 후 수사종결 후에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의 정보 2. 제13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살 것을 제의하는 정보 4.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제의하는 정보 5.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알선정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 유해 매체 지정 관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유해 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은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는 사람들은 실명이 인정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바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인증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 될 경우 청소년 명의로 된 스마트폰에 설치된 유해콘텐츠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필터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별에 따라 포인트 이용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는 것, 대화 내용 저장 가능 여부, 금칙어 관리 등도 청소년 유해 매체로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법 정보에 포함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에는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착취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불법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여기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벌칙과 과태료 조항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에 대한 조항 강화, 유도 수사 기법 도입,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전담 기구 설립, 민간 영역 모니터링 지원 강화하는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한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고액의 손해배상을 부과함으로써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2

안성희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성적 대상이 되는 것은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없음에도 청소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정보들에 노출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상채팅, 노출사진 전송 등으로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매 또는 성폭력에 빠지게 되는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졌다. 특히 발제자들이 지적하듯이 최근의 성매매는 이른바 채팅 앱을 통한 개인적인 만남으로 시작되어 적발이 어렵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장한 알선업자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채팅 앱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채팅 앱이 개인간의 대화 통로, 사적인 만남의 통로로서 기능한다면 이를 규제할 이유도 명분도 없겠으나, SNS의 발달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소통통로로서 채팅 앱이 필요한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채팅 앱이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입시키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채팅 앱 운영자에게 성매매 알선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① 채팅 앱 자체에 대한 규제와 ②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채팅 앱 자체를 규제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시 성년인증, 경고문구, 금칙어 지정,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채팅 앱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채팅 앱의 운영자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거나 성매매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알선 정보의 ‘제공’ 외에 ‘유통’까지 포함시킨다면 운영자의 보다 책임 있는 자정 노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그에 대한 운영자의 고의 입증 가능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채팅 앱 운영자로서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버리고 새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해외서버를 이용하는 등 범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고 국내 앱 개발자에게만 규제의 효과가 미칠 수밖에 없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예상된다. 그렇더라도 채팅앱의 이용·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주로 청소년 성매매에 이용되는 앱이라면 신속하게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선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고 문구 게시, 금칙어 지정, 성매매 사용자 이용제한 조치 등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개인적으로 깊이 공감한다. 현행 법률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그루밍법’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이 먼저 청소년에게 제안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오히려 청소년들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하여 성매수자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수 있어 이러한 성매수자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 유인하였다’고 볼 것인지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는 대가를 교환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과 청소년보호는 직접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화상채팅 등의 방법으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나아가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규정이 예측 가능하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위와 같은 행위 중 일부분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경우’에 포함되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도 10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동복지법의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3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I. 현황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으로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고 새로운 통신기기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범죄 등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성행위를 조장하는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사이트 외에 앱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확대 지정(개별고시)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의무화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난해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하여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음란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랜덤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5.11)

- (권고대상) 110여개 랜덤채팅앱(운영자)
- (권고내용) ① 성매매 주의, 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② 음란선택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③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④ 마약·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⑤ 신고 창구, 유과기관 안내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
- 시정요구 : 불법 유해 정보 30건(이용해지 또는 정지조치)

특히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랜덤채팅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의심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랜덤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고와 시정요구를 이끌어냈음.

* 신고현황 : '15년도 42건, '16. 1~9월 181건

* 앱 중점심의(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채팅앱 등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 총 380건
 - 기간('16.2~5월) / 음란·성매매 정보(226건)
 - 기간('16.7~8월) /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또한 경찰청과 협업하여 채팅앱 등을 악용한 성매매 유인·알선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16.2.22~5.31)을 실시하여 이 기간 중에 성매매 알선·유인 등 성매매 사범 8,502명(1,972건)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청소년성매매사범 419명(168건)을 검거한 바 있음.

이외에도 우리 부 소속 인권보호점검팀과 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랜덤채팅앱에 대한 상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이후에는 경찰청 차원에서 집중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II. 발제의 개선안에 대한 의견

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관련사항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의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유통 금지 등)를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온라인상의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성매매를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의 유통 주체와 대상 등에 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업자와 유통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다만, '알선 또는 알선 정보의 유통을 제공' 과 같이 처벌하는데 있어 법정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왜냐하면 알선과 제공은 특정상대방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유통

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죄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의2(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알선정보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강요하는 정보나 이와 관련한 제의 또는 알선정보는 개인 간의 대화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제3자가 볼 수가 없으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 기술적 조치에 의해 발견, 전송 방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의3 신설을 통해 랜덤채팅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채팅의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인인증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려는 것은 온라인상의 성매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다만, 랜덤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채팅의 실태를 고려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성매매를 방조·조장하는 채팅을 제공했다는 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이 규정의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봄.

나. 청소년보호법 개정 관련사항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를 인정하는 것은 각 심의기구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청소년유해성 중복심의를 예방하여 심의기관 중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정당성 및 수용성을 높이도록 한 것임. 정보통신물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전문심 의기관에서 심의한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도록 한다거나 채팅애플리케이션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심의 한다는 것은 현행 매체물 심의체계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소관과(청소년보호환경과)의 입장임.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성인이 이용할 콘텐츠와 청소년이 이용할 콘텐츠를 구분하는 제도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인의 이용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성매매가 빈번히 일어나는 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가

능하도록 화면캡처기능 강화, 로그기록 저장 등 증거보전 방안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심의가 가능한 부분(해당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자에 의한 신청)도 있어 이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함.

〈등급 구분 제도 강화〉

등급제도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는 매체물에 대하여 지정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채팅사업자가 지켜야 할 등급의 요건이나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채팅서비스제공자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화면캡처기능 도입, 로그기록 저장, 성매매정보 모니터링 실시, 이용자 연령등급제도 도입, 성매매유인행위 신고 버튼 장착, 회원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지 않고도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회원간 대화서비스 제공시 나이 및 본인확인〉

청소년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이용은 성인들에게만 한정하기 위한 것인데 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의 의무사항인 나이 및 본인확인 의무 사업자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는 빼고 채팅서비스사업자에게만 한정한다면 다른 매체물 또는 다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경우 나이 및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의미하게 될 수 있음.

만일, 회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나이 및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청소년보호법에 규정할 경우는 현행규정에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다. 성매매방지법의 성매매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채팅앱 등에 대해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규제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문심의기관의 심의로 결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게시대상 디지털콘텐츠의 요건을 정한 바 있음. 채팅앱을 성매매경고문구 게시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매매실태조사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4*

한명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기획팀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음란’ 심의 현황

○ 연도별 심의·시정요구 현황

성매매음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0.
심의	10,667	15,076	34,634	53,985	55,906	65,280
시정요구	9,343	14,085	32,330	49,737	50,695	62,453

○ 채팅앱 심의 및 조치 현황

(기간 : 2015. 1. 1. ~ 2016. 9. 30.,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 9.	계
시정요구	148	2,098	2,246
자율규제 요청삭제	6	1	7

- 2016년 채팅앱 심의 내역

(기간 : 2016. 1. 1. ~ 2016. 9. 30., 단위 : 건)

시정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
도박	불법 식의약품	성매매음란	기타법령위반	계	
50	621	671	756	2,098	6

※ 기타법령위반 : 불법명의거래, 문서위조, 불법대출, 마약류 등

※ 채팅앱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채팅앱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 요청('16. 6. 1., 10. 11.)

* 이 내용은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성매매 채팅앱’ 실효적 규제 방안 모색 필요

- 초연결사회로 접어든 현재, 채팅앱에 대한 규범적·사회적 가치판단 기준, 법적 개념 및 규제 대상, 범위가 불명확함
 - 일반 인터넷과는 달리,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정보는, 그 정보 내용의 표현형태, 성격과 영향, 내용과 주제, 양적·질적 정도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서 다르게 존재함
- 공적규제 및 자율규제 기관간 지속적이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통신분야의 규제 수단을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및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스마트폰업체, 채팅앱 개발자 등의 자체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앱개발업체 및 앱개발자의 자체심의 등 자정활동에 대한 노력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규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규제 시스템의 성숙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법제도 개선시 유의사항’

- 제시된 법제도 개선안은, 종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다른 법률과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대체로 동의함

○ 다만, 발제문 중 ‘이노근 개정 법률안 폐기 사유 및 시사점’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성매매 암시·유발·유통금지 정보 범위의 적절성, 명확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성매매와 무관한 만남이나 청소년간 단순 만남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성매매와 무관한 만남이나 청소년간 단순 만남 등과 관련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지적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고, 채팅서비스 내용은 사인 간 통신에 해당되므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했을 시 삭제토록 조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팅 서비스 자체를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특정 이용자간 대화서비스에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까지 포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채팅 서비스 자체를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폐기 사유가 상당하고, 형사법적인 규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대체안 마련’ 없이, 감성적으로 재추진하는 것은, 입법정책 전략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5

배진수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배진수입니다.

먼저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조진경 대표님과 두 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통해서 미처 세밀히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는 채팅 앱에 대한 규제 및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발제자분들의 견해에 공감하면서, 주로 법적 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형사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1일 일부 채팅 앱 운영자들이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방조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팅 앱 운영자들을 확실히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발제자께서 주로 검토하신 이노근위원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 개정안이 일부라도 통과되었다면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발제자께서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제 15조에는 알선영업행위에 성매매 알선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팅 앱 운영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

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와는 달리 제13조의 2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경합니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강력히 처벌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알선행위가 지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그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유통을 영업으로 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채팅 앱 운영자들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알선업자들에 준하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채팅 앱 운영자들을 제15조의 알선영업행위 등(알선정보의 유통)으로 강하게 처벌하려면 그 정보유통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채팅 창 제목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비속어 약어, 은어, 문자, 그림, 사진, 동영상등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 간 사적인 대화 내용이 알선¹⁾에 해당하는 것인지 채팅 앱 운영자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채팅 앱 운영자들에게 청소년 성매매알선정보 유통의 고의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채팅 앱 운영자들은 제15조보다 경한 제13조의 2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더 높아 제15조에 알선정보의 유통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더라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13조의 2, 즉 “유인·권유·강요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그 자체를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의 하나로 명시하여 그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이노근의원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제10조의 2 중 2호에서 6호를 모두 삭제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 3호와 4호, 즉 아동·청소년이 대가를 받고 이성 간 만남의 상대방이 되고자 하는 내용의 정보도 삭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2조의 4 각 항의 행위태양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청소년 성매매를 암시, 유발하는 정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3호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가를 제공할 의

1)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사를 표시하며 이성 간 만남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는 정보는 청소년 성매매암시 유발정보로 포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물론 채팅 앱 가입 시 본인 인증을 거쳐 인증된 나이가 실제 표시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입니다).

2.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

발제자께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랜덤 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심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심의할 수는 있도록 열어두면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재제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채팅어플리케이션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제시해주신 조항의 신설만으로 실질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더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은 여성가족부에서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건을 덧붙이자면, 방송통신위원회도 채팅 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유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기준 자체가 주로 음란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성매매 정보 등을 유통시키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규정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점은 조진경대표님의 발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인 [별표2]의 라항은 ‘음란물’을 통한 성윤리의 왜곡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읽히고, 하항 역시 청소년의 불건전한 교제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이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는 내용을 심의기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 신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보호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에 산재해 있는 규정을 한데 모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과 주체를 일원화한다면 날로 심각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

토론 6*

차인순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미래까지도 착취하는 중대범죄임. 발제에서 잘 드러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 사이버 성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현 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그 구체적 내용들에 대하여 큰 틀에서 동의함.

특히 IT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매체의 다종다양화를 고려할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클라우드 슈밥,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 개정안(시안)에 대한 몇 가지 논의

○ 아청법 시안 제2조 “유인, 권유, 강요하는 정보” 및 시안 제13조의2

- “알선” 추가의 필요성

현행법 제13조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현행 제15조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규율하고 있으며,

* 이 토론문은 전적으로 개인의 의견임.

또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대상 기준 중 제3호에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할 우려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알선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정의규정 신설의 필요성 관련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유인, 권유, 강요하는 정보’라는 별도의 정의규정을 마련하지 않아도 본 규정에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약어, 은어, 비속어 등 유인, 권유, 강요하는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법문에 적시하는 문제도 입법적으로 다를 것인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을 개선할 것인지¹⁾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인지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 13세 규정의 타당성

또한 시안에서 13세 미만에 대한 규정의 경우, 필요하다면 정의조항이 아닌 본문 규정에서 가중처벌 규정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인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16세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임.

○ 청소년 보호법 제7조제3항 제3호 신설 관련

- 선결 조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하여 채팅 앱에 대한 유해매체물의 심의 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가져 온다면 조항을 신설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짐.

1) 조주은, “청소년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 조사처, 2015.11.4.

그런데 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현재와 같이 급속한 속도의 IT환경에서 충분히 실효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임.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발제자가 소개한 영국의 사례와 같은 전담기구 (아동착취온라인 보호센터) 와 같은 전향적인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음란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 더하여 사이버 상의 성매매 알선, 유인, 권유, 강요의 신속한 신고와 수사체계와의 연계, 사이버 예방 체계를 종합적으로 모델링한 (가칭) 아동청소년 온라인성범죄예방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문제를 상 상해 볼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한가지 질문은 현장의 시각에서 볼 때 인터넷 사이트용으로 개발된 유스키퍼의 효과는 어떠했으며, 채팅 앱에도 기술적으로 장착이 가능하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 그 밖에 19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있었던 인터넷기업협회 측의 의견도 짚어볼 필요가 있음²⁾

- 모바일 앱은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라 서비스 운영자와 유통 플랫폼 제공자 등 서비스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더 명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검토 필요.

- 규제에 있어서 국, 내외 기업의 형평성 문제. 정부 측 해결방안은?

(페이스북 등 외국기업에서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역차별이 발생하고 한국의 IT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논리.)

2)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안 검토보고서 참고자료, 2014.4

